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1,898,877	13,856,966
일반회계	416,403,969	12,492,119
특별회계	45,494,908	1,364,847
기타특별회계	45,494,908	1,364,84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2,225	9,967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485,923	104,578
수질개선 특별회계	60,561	1,81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4,236,006	127,080
주차장 특별회계	1,277,722	38,332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0,822,364	324,671
기반시설 특별회계	793,334	23,8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4,486,773	734,60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258,385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